

판례에서 바라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권양섭*

요약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I. 서론

디지털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범포 수사현장에서 수많은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되어지고 있다. 우리의 형사소송법도 이와 같은 수사 환경을 반영하여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 두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개정은 2011년 압수수색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개정이었으며, 두 번째 개정은 2016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제313조의 개정이었다. 두 번의 개정으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었지만, 두 개의 조문만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다행인 것은 이와 같은 입법적 공백을 판례가 채워주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정

도로 축적되었다. 그동안 이론과 학설만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연구하였다면, 이제는 이론과 법률에 기초하여 판례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리적 증거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디지털 증거가 적정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수집되었다하더라도 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의 문제는 증거법상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디지털 증거는 취약성을 특성으로 함으로 진정성 문제가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를 도식화 해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

*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kwon@kunsan.ac.kr).



(그림 1)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유효성 평가 척도

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판례를 분석하여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앞서 제시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II. 디지털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억제하여 적법절차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형사소송법¹⁾도 2007년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입법화하였다.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면, 해당 디지털 증거는 진정성과 전문법칙의 예외를 검토해볼 필요도 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다만, 우리의 대법원²⁾은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의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제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현재까지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대법원이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 증거가 쟁점이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한 대표적인 판례는 전교조 시국선언 준항고 사건³⁾과 종근당 준항고 사건⁴⁾,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⁵⁾ 등이 존재한다. 전교조 시국선언 준항고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의 방법이 주요쟁점이었으며, 종근당 준항고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의 참여권보장이 주요쟁점이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별건정보의 증거능력이 주요쟁점이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판례의 주요내용을 압수방법과 피압수자의 참여권, 별건정보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디지털 증거의 압수방법과 위법수집증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고자 할 때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원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선별적 압수의 원칙과 예외적 원본압수를 규정한 것이다.

디지털 증거 압수방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로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교조 시국선언 준항고 사건과 종근당 준항고 사건 두 판례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도1190 결정⁶⁾에서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3)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도1190 결정.

4)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도1839 전원합의체 결정.

5)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6) 본 대법원 결정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전교조 사무실 서버를 압수·수색하였고, 압수·수색 영장집행방법에 대하여 전교조가 법원에 준항고한 사건이다.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화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그대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입법화 되었으며, 현재까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영장집행 방법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⁷⁾에서도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의 주요 내용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발부시 영장에 첨부하는 영장별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본 결정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현장에서 원본을 반출하거나 복제본을 생성하여 반출할 수 있는 경우를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장매체 자체를 예외적으로 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며,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즉, “예외적 매체 압수사유”와 “반출이 허용되는 사유”를 아무런 기준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외적 매체 압수사유”와 “반출이 허용되는 사유”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압수방법이다.

위 두 판례를 정리해보면, 디지털 증거의 압수방법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출력하거나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압수현장에서 이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이와 같은 압수의 방법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판례 모두 예외적으로 외부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으로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2.3. 피압수자 참여권과 위법수집증거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⁸⁾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압수·수색절차의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 절차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리적 증거 압수와 관련해서 피압수자의 참여권보장과 관련된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별다른 쟁점이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중근당 준항고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7) 본 대법원 결정은 배임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근당 사무실에 있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한 후, 저장매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약사법 위반)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중근당측에서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사건이다.

8) 공판절차에서의 제121조 참여권 규정은 수사절차에서도 준용되고 있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중에 준용한다.

대법원 2011. 5. 26.자 2009도1190 결정에서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즉,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계속적으로 보장되어야 적법한 영장집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도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도1190 결정 내용의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우선적으로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범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탐색·출력을 막는 절차적 조치가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

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참여권 보장이 없는 증거수집은 위법한 영장집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해 또 다른 쟁점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종료시점이다. 압수·수색의 종료시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시점까지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중근당 사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이미징 형태로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 외부로 가져오는 과정과 이미징 사본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의 관련 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부분의 파일을 복사하거나 해당 부분을 출력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디지털 저장매체를 탐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 중의 일부이므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4. 별건정보와 위법수집증거

처음부터 의도한 별건수사의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라고 할 수 있지만, A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 A사건과 무관한 새로운 범죄사실과 관련된 별건정보(신증거)를 발견한 경우 별건정보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내에서는 미국의 플레인뷰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⁹⁾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 별건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¹⁰⁾이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을,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9) 미국에서의 Plain View 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연구」, 대검찰청, 2007, 32쪽 이하 참조.

10)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파일을 압수하여 올,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갑이 녹음파일 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 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 적 위법이 있으므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위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별건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을 뿐, 별건정보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또다시 별건정보의 증거능력 논란을 야기하였다.¹¹⁾ 그 후 앞서 살펴본 중근 당 준항고 사건에서 또 다시 별건정보의 증거능력이 쟁점화 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별건 정보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명확한 요건을 제시 하였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결정내용을 분석해 보면 별건정보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i)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 일 것
- ii) 별도의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일 것
- iii)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을 것
- iv)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최초 압수·수색이 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였을 것

III.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판단

3.1. 진정성의 개념

진정성 문제는 증거의 진정(眞正)에 관한 문제로서 원본증거의 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동일성의 문제와 법정에서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조작이 없었다는 무결성의 문제를 포함한 개념이다.

일반적인 물적 증거는 대부분 최초의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의도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한 변경이 쉽지 않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취약성을 특성으로 하므로 진정성의 문제가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저장매체에 저장된 증거라 할지라도 수집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11) 별건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외국에서의 논의와 해석론의 주요 쟁점은 김성룡,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평석을 곁하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015.12. 106쪽 이하 참조

증거의 진정성은 증명력을 따지기 이전에 구비되어야 하므로 증거능력의 문제이고,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의와는 상관없는 영역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지만,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밖에 없다.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관련해 대표적인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일심회 사건¹²⁾과 왕재산 사건이다. 아래에서는 두 판결내용을 토대로 하여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3.2. 진정성 판단의 기준

3.2.1. 무결성

무결성은 최초증거가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디지털 증거의 변경이나 훼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일심회 판결¹³⁾에서는 무결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왕재산 판결¹⁴⁾에서는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무결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수사 실무상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증명

하는 방법으로 ①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를 압수한 다음 피의자 등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고, ②서명, 봉인 과정을 녹화하며, ③압수 대상자가 입회한 가운데 봉인을 풀고, 통합 포렌식 프로그램인 ‘Encase’를 이용하여 압수한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별도의 저장장치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복구 등의 분석작업을 실시하며, ④쓰기방지장치(Fastblock)를 압수한 저장매체에 연결한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 생성작업을 실시하고, 이미지 파일에 대한 해쉬값을 계산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해쉬값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⑤피의자 등이 법정에서 무결성을 부정하는 경우, 압수한 저장장치의 해쉬값과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을 비교하도록 법원에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¹⁵⁾

3.2.2. 동일성

일심회 판결에서 대법원은 동일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즉, 대법원 동일성을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문건과의 동일성, 원본을 하드카피하거나 이미징한 경우에는 원본과 복제본과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왕재산 판결에서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12)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심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국가기밀 등이 수록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전달한 사실, 피고인중 한명이 대북보고문을 작성하여 북한공작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보고한 사실, 피고인 중 한명이 대북보고문을 작성하여 북한공작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하향연락문 내지 하향지령문을 수신한 사실, 피고인들 일부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디지털 기록들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법정에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다.

13)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4)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5)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집 예규 410호, 2006. 11. 21.); 김영기,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방안”, 『형사판례연구』 제19권, 박영사, 2011, 516쪽.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2.3. 신뢰성

대법원은 왕재산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일심회 판결에서도 신뢰성 판단은 검증 당시 규격에 적합한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Encase 프로그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렌식 도구로써 신뢰성이 인정된다는 점,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이 구비되어 분석관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원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하였다.

IV.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의 적용

4.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의 의의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에 의하여 진술되거나 서면기재형태로 제출되는 증거를 말한다. ‘전문’은 진술자가 경험자로부터 들은(hear, 聞) 것을 법원에 전달하는(say, 傳) 것을 의미하는 영미증거법에서 유래하는 용어이다.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원본증거에 대비되는 것이다.¹⁶⁾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정보를 매개로 하여 사람의 진술이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고, 저장된 디지털 정보

가 문서로 출력 또는 복제되어 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에 정보의 내용이 사람의 경험사실을 담고 있다면, 전문증거에 해당될 수 있다.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도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고 함으로써 이를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제311조로부터 제316조까지에 규정한 전문증거는 일정한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4.2.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의 구분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 제시되는 방식과 형태가 전문증거와 유사한 경우가 많지만 전문증거로 볼 수 없는 유형들도 존재한다. 예컨대 로그기록 같은 컴퓨터시스템 자체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들은 사람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은 기계적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압수 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법정에 제출시까지 증거의 진정성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로 증거능력을 판단하면 족하다. 전문법칙의 기초를 이루는 근거는 전문진술증거가 선서 없이 행해졌고, 그 진술이 반대신문에 의해 검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와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러나 사람의 진술이 아닌 디지털 매체의 기록은 와전가능성이 없으며, 반대신문도 무의미하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 전문증거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비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의 준수와 증거의 진정성 여부만을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10조2에 의하면 전문증거는 서류 또는 진술을 뜻하며, 진술의 형식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녹음테이프에 기록된 진술을 전문증거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의해 기록되거나 생

16) 최영승, 『형사소송법개론(제2판)』, 피앤씨미디어, 2015, 295쪽.

성된 데이터도 그것이 사람의 지각·기억·표현 등의 방식으로 저장된 것이라면 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에 관해서는 전문법칙을 적용하고 있다.¹⁷⁾

4.3. 디지털 증거의 전문법칙의 예외 가능성

컴퓨터에서 출력한 문서가 전문증거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한 출력한 문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3조와 제3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016년 5월 29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전 대법원은 일관되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스스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로 제한해 왔다. 따라서 작성자나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문서는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야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작성자가 “내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진정성립을 부인한 경우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수집된 컴퓨터 기록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있어야 했는데 실제 대부분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어서 범죄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보다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반적으로 전문법칙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디지털 매체의 출력물은 주로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록·저장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증거능력의 허

용가능성의 문제는 통상 형사소송법 제315조 규정의 적용범위 문제와 직결되어졌다.¹⁸⁾

업무문서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써, 내부적인 비망록이나 메모, 거래 관계자의 회의내용, 업무지시사항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또한 기록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의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 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¹⁹⁾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²⁰⁾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나아가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

17)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컴퓨터디스크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위 컴퓨터 디스크는 사실에 있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기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해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18) 업무상의 통상문서를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근거는 일상 업무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업무상의 신용 때문에 정확한 기재를 기대할 수 있고 기계적 기재로 인하여 허위기재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작성자를 일일이 소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점에 근거가 있다.

19) 본 사건은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라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하달 받고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대신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20)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송범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식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직원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된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²¹⁾은 업무상 작성된 통상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사건 이후, 2016년 5월 29일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²²⁾되었는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다하더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신설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개정이후, 현재까지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례를 통해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례가 축적해 나가야 한다.

21)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 계정 「내게쓴편지함」에 있는 2012. 12. 12.자 ‘신의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이었다. 이메일 계정 사용자는 공판기일에서 실시한 증인신문에서 “위 이메일 계정을 자신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다른 사람이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사실은 없으나, 425 지논파일, 시큐리티 파일 등의 첨부파일은 자신이 작성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2) 제313조(진술서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판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디지털 증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압수방법이다. 디지털 증거는 무체정보성과 대량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압수대상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판례가 영장별지 등을 통해 압수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원칙과 영장별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진정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절차에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서도 진정성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

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저자소개〉

참 고 문 헌

- [1] 권양섭,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6.
- [2] 김정옥,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일심회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연구*, 창간호, 한국디지털 포렌식학회, 2007.11.
- [3]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6호, 대검찰청, 2008.10.
- [4] 대검찰청,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절차와 시설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06.06.
- [5] 양근원, “디지털 증거의 특징과 증거법상의 문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제12호, 한국경찰학회, 2006.
- [6] 이은모, “전자적 정보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3호, 한국형사법학회, 2005.
- [7] 이완규,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5.
- [8] 이창섭,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관한 몇 가지 검토”, *동아법학*, 제6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9] 오기두,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사법*, 제24호, 사법발전재단, 2013.
- [10] 오길영,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민주법학*, 제5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 [11] 전현욱, “조서 등의 진정성립 증명 방법 다양화 가능성”,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12] 탁희성,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허용가능성”, *디지털 포렌식 연구*, 창간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07.11.

사 진

권 양 섭 (Kwon Yangsub)

2003년 2월 : 군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6년 2월 : 군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2009년 2월 : 군산대학교 대학원 사법행정학과 박사
 관심분야 : 형사소송법, 디지털 포렌식, 이디스커버리